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09. 9. 28 조례 제169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 8. 22 조례 제2010호(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 11. 22 조례 제29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도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

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 11. 22>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가.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 건축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 다.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마. 의료시설 :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바. 공장시설 :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 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대단위사업
 - 아. 기타시설 :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도물 양에 대한 요금
 -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 6. 출장경비
 - 7. 지원경비
 -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 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가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을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가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가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③ 시장은 원인가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사업은 분할하여 부과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기한은 최대 12개월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2, 단서신설 2022. 11. 22>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가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피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피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피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가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2 조례 제201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2. 11. 22 조례 제2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 11. 22>

원인가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가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text{총사업비}/\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
 -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ℓ 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침투계수
 -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가부담금은 노온정수장 준공시점(1988년)부터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누적하여 산출된 당해 년도 원인가부담금으로 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제4조제1항제1호)

○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

시설유형별	적용대상	급수추정량 (L/일)	산 출 방 법
주거시설	20세대 이상	1인1일 최대급수량	세대수 × 2.5인 × 330/1000 × 톤당산정금액
숙박시설	객실 15실 이상 (600㎡ 이상)	130	건축연면적(㎡) × 130/1000 × 톤당산정금액
판매·영업·업무 시설	1,000㎡ 이상	40	건축연면적(㎡) × 40/1000 × 톤당산정금액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000㎡ 이상	40	건축연면적(㎡) × 40/1000 × 톤당산정금액
의료시설	1,000㎡ 이상	40	건축연면적(㎡) × 40/1000 × 톤당산정금액
공장시설	2,000㎡ 이상		사업계획서상 1일 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용수사용계획량 전액 부과
대단위사업	20세대 이상	1인1일 최대급수량	일최대 용수 사용량
기타시설	1,000㎡ 이상	40	건축연면적(㎡) × 40/1000 × 톤당산정금액

- 가. 1인1일 최대급수량은 「광명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계획1인1일 최대 급수량 원단위로 하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계획1인1일 최대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한다.
- 나. 주거시설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20세대~34세대는 세대당 1인, 35세대 이상은 세대당 2.5인을 적용한다.
- 다.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 라. 급수추정량 산정기준은 공장 설립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 용수사용량 또는 물 사용계획량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제

(단위 : 원)

계량기 구경별	가. 원인자 부담금	나. 비 고
13mm	172,000	
20mm	466,000	
25mm	830,000	
32mm	1,800,000	
40mm	2,541,000	
50mm	4,047,000	
75mm	8,389,000	
100mm	14,296,000	
150mm	31,127,000	
200mm	44,285,000	
250mm	59,785,000	
300mm	74,543,000	

주)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노온정수장 준공시점(1988년)부터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누적하여 산출된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 \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 \sqrt{2gh} \text{ 오리피스공식})$$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m ³ /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m ³ /hr)
C = 유량계수(Ca × Cv)	Ca = 수축계수(0.666적용)
Cv = 유속계수(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 = 면적(m ²) = 10,000a(cm ²)	g = 중력가속도(9.8m/sec 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 ²)
(수두 10m는 수압1kg/cm ² 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면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³) A = 면적(m²) L =연장(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